

등록번호	간선도로과-1711
등록일자	2019. 06. 12
결재일자	2019. 06. 12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시설사무관	간선도로과 과장
윤순규	정경인	전결 2019. 6. 12. 이정기
협조자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 지침 일부개정 추진	주요 검토사항	
	정 책 중 요 도	
	민원 · 갈등 가능성	
	기관간 이견가능성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서민생활 관련성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의 유효기간 설정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
로
간 선 도 로 과

I	개정이유
---	------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 사업명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II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 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III

향후 계획

- ‘ 19. 6월 : 규제대상 심사대상 심의
- ※ 단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청취는 불필요
- ‘ 19. 7월 : 개정(안) 발령